

# 조세 재정

2017. 7. 20(통권 제51호)

# BRIEF

##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044-414-2339)  
홍민옥 공인회계사(044-414-2484)



BRIEF

---

##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 (044-414-2339)

홍민옥 공인회계사 (044-414-2484)

---

I. 서론 .....	02
II.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03
III. 요약 및 시사점 .....	14



## I 서론

- OECD는 2017년 4월 11일 OECD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sup>1)</sup>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
    - 임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산출을 위해 근로자<sup>2)</sup>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와 더불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sup>3)</sup> 등을 모두 고려
  - 특히,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 및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 개인 근로자의 세부담 및 세부담 구성 비중 현황을 정리
  - 또한, 2016년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현황 및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
  -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에서 근로자에 대한 가계현금급여를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조세격차(\%)} = \frac{\text{개인소득세} + \text{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 \text{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 \text{가계현금급여}}{\text{임금} + \text{고용주부담지불급여세} + \text{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times 100$$

1)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ctp/tax-policy/taxing-wages-201725124.htm>, 접속일자: 2017.05.25.)

2) '성인 정규 근로자(adult full-time worker)'가 그 대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사무직 등 비육체 노동 근로자도 포함함

3)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호주·오스트리아·헝가리·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통계에 포함됨

- 고용주의 총노동사용비용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로 표현되기도 함
-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Taxing Wages 2017*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

## II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1. 2016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 가. 조세격차 현황

- 2016년 현재 OECD 회원국들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0%로, 최대 54.0%(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표 II-1〉 참조)<sup>4)</sup>
  - 조세격차가 OECD 평균인 36.0%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OECD 평균보다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개국
- OECD 평균 조세격차가 전년 대비 평균 0.07%p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20개국, 감소한 국가는 14개국이며, 칠레의 경우 조세격차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들에서 조세격차가 감소한 주된 요인은 소득세의 감소(-0.09%p)였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0.02%p)
-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격차는 22.2%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중 30위로 세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

4)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 16 참조.

〈표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 (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P)

국 가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독일	49.4	0.05	-0.12	0.17	0.00
프랑스	48.1	-0.34	0.19	0.17	-0.70
이탈리아	47.8	-0.08	0.02	0.01	-0.11
일본	32.4	0.12	0.01	0.06	0.06
미국	31.7	0.15	0.19	0.00	-0.05
캐나다	31.4	-0.13	-0.17	0.01	0.02
영국	30.8	-0.03	-0.11	0.04	0.04
한국	22.2	0.18	0.13	0.02	0.02
OECD 평균	36.0	-0.07	-0.09	0.04	-0.01

주: 1) 지불급여세(payload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

## 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 2016년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총노동사용비용<sup>5)</sup>은 50,214달러이며, 노동사용비용 중 소득세 비중은 13.4%,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지불급여세 포함)의 비중은 22.6%(<표 II-2> 및 [그림 II-1] 참조)<sup>6)</sup>
  -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부담 비중은 평균 14.4%, 근로자 부담 비중은 평균 8.2%로 고용주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노동사용비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54,053달러이며(18위),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 비중은 5.2%,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7.0%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
  - 소득세의 경우 OECD 평균인 13.4%보다 8.2%p 낮았으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
  - 사회보장기여금의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상대적 차이를 감안하면 근로자 부담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7.6%로 OECD 평균인 8.2%와 비슷한 수준

5)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로 표시

6) 본 보고서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p. 17-18 참조.

-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9.4%로 OECD 평균 14.4%보다 5.0%p 낮았음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구성요소별 OECD 회원국 내 순위는 모든 항목에 걸쳐 낮은 편 (<표 II-3> 참조)
  - 조세격차는 OECD 회원국 중 30위로 가장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소득세 항목의 순위가 매우 낮은 반면,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 수준
    - 개인소득세는 칠레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34위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회원국 중 18위

<표 II-2>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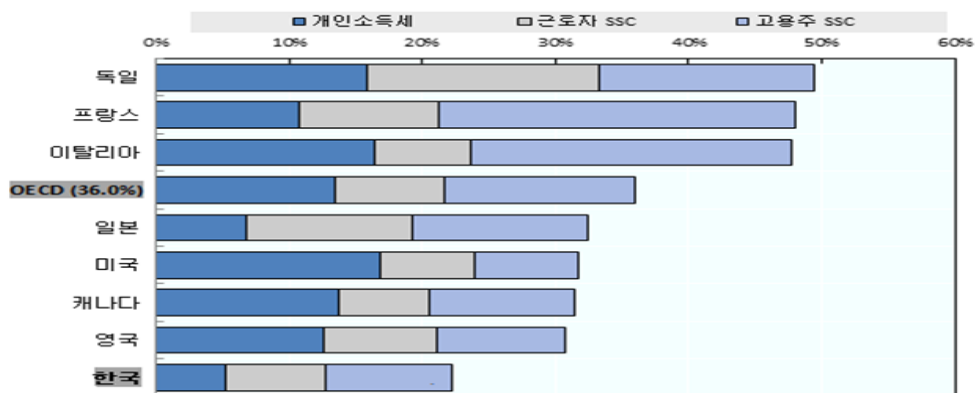
국 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독일	49.4	15.9	17.3	16.2	73,683
프랑스	48.1	10.8	10.5	26.8	65,294
이탈리아	47.8	16.4	7.2	24.2	55,609
일본	32.4	6.8	12.5	13.1	57,882
미국	31.7	16.9	7.1	7.7	56,956
캐나다	31.4	13.8	6.8	10.8	45,998
영국	30.8	12.6	8.4	9.7	58,714
한국	22.2	5.2	7.6	9.4	54,053
OECD 평균	36.0	13.4	8.2	14.4	50,214

주: 1) 지불급여세(payload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2) 구매력 기준 미국달러(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7.

[그림 II-1] 2016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8.

<표 II-3> 2016년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한국 vs. OECD 평균(독신가구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 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노동사용비용
한 국(A)	22.2	5.2	7.6	9.4	54,053
OECD 평균(B)	36.0	13.4	8.2	14.4	50,214
한국과 OECD 평균 격차(B-A)	13.8	8.2	0.6	5.0	-3,839
OECD 회원국 중 순위	30	34	18	27	18

## 2. 2016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형태<sup>7)</sup> 별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4> 참조)<sup>8)</sup>
  - 평균 임금수준의 “독신·무자녀 가구”가 “기혼·2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평균 임금수준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36.0%, 평균 임금수준의 외별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26.6%
  - 같은 독신 가구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
    - “임금수준 67%의 독신·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16.6%)는 “임금수준 67%의 독신·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32.3%)의 절반 수준
  - 이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과 정부의 가계현금급여 지급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II-2] 참조)

7) OECD(2017)에서는 다음의 8가지 가구 유형을 선정하여 세부담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1.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67% 임금수준
2.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00% 임금수준
3. 독신·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67% 임금수준
4. 독신·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67% 임금수준
5.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00% 임금수준(외별이)
6.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33%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7. 기혼·2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67%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67% 임금수준)
8. 기혼·무자녀로 해당 국가 평균의 133% 임금수준(1차 근로자 100%, 2차 근로자 33% 임금수준)

8) 본고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 54 참조.

- “독신·무자녀 가구”에서는 모두 OECD 평균과 10%p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증가
- 기혼 가구를 살펴보면 자녀유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기혼 가구 역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조세격차 차이가 확대되는 패턴이 나타남
- 예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낮은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 OECD 평균보다 높은 세부담을 보임
  - “임금수준 67%의 독신·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7.0%로 OECD 평균(16.6%)을 상회
- 우리나라 역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만,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의 정도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2] 참조)
  - 우리나라의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9.6%,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20.9%로 1.3%p 차이를 보이는 데 그침
  - 반면 OECD 평균의 경우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 28.2%,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 32.8%로 4.6%p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보다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표 II-4〉 2016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국 가	독신· 무자녀 67% 임금수준	독신· 무자녀 100% 임금수준	독신· 무자녀 167% 임금수준	독신· 2자녀 67% 임금수준	기혼· 2자녀 100% 임금수준 <sup>1)</sup>	기혼· 2자녀 100-33% 임금수준 <sup>2)</sup>	기혼· 2자녀 100-67% 임금수준 <sup>3)</sup>	기혼· 무자녀 100-33% 임금수준 <sup>4)</sup>
캐나다	26.5	31.4	32.7	-14.9	11.9	20.5	24.7	28.3
프랑스	43.0	48.1	54.4	24.5	40.0	37.5	42.6	42.7
독일	45.3	49.4	51.4	31.0	34.0	38.8	42.4	45.2
이탈리아	40.8	47.8	54.1	25.3	38.6	38.4	41.5	42.7
일본	31.0	32.4	35.0	24.9	27.1	28.5	29.4	31.6
한국	19.0	22.2	24.5	17.0	20.0	19.6	19.8	20.9
영국	25.9	30.8	37.3	6.2	25.8	22.4	26.2	25.8
미국	29.3	31.7	36.5	12.7	20.8	24.5	26.5	29.2
OECD 평균	32.3	36.0	40.4	16.6	26.6	28.2	30.9	32.8

주: 1) 외벌이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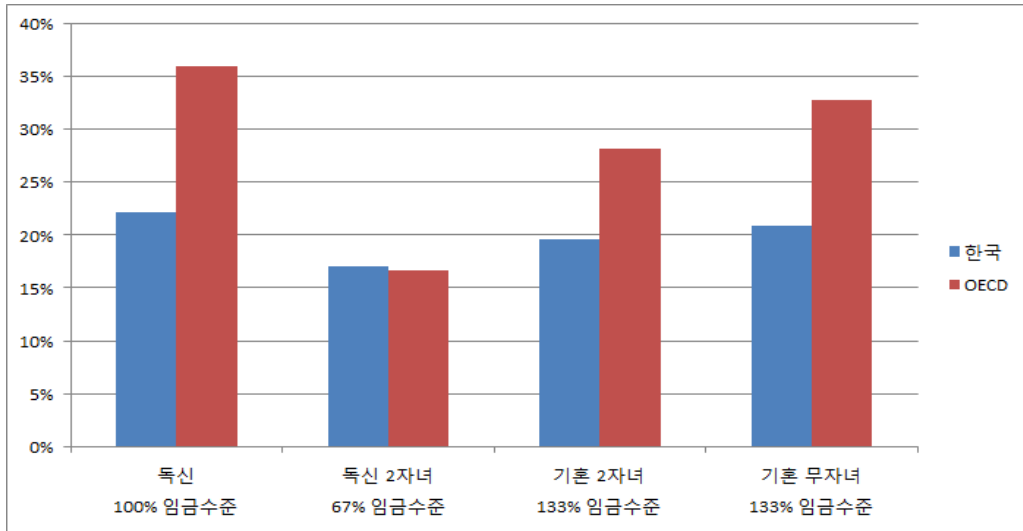
2)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3)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67%

4) 1차 근로자 임금수준 100%, 2차 근로자 임금수준 33%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54.

[그림 11-2] 2016년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주: 자료의 제한으로 독신·2자녀의 경우 67% 임금수준, 기혼·2자녀와 기혼·무자녀의 경우 133%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5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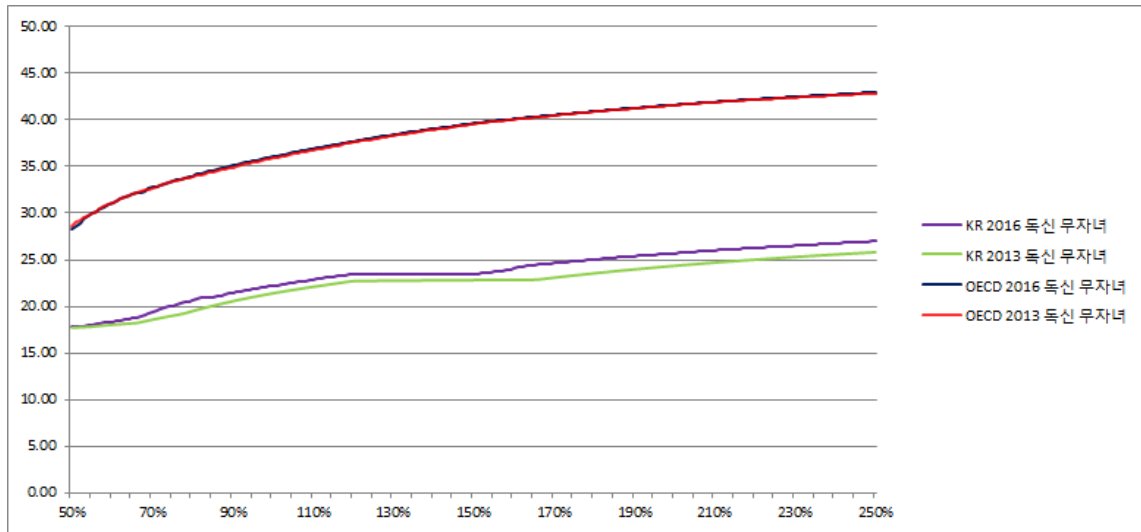
-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구형태 및 소득구간에서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11-3, 4, 5] 참조)
  - “독신·무자녀 가구” 및 “기혼·무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임금소득 구간에서 OECD 평균이 우리나라 수치를 상회함
  - 다만 “기혼·2자녀 가구” 저소득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았음
    - 평균 임금의 50~70% 구간에서 세부담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가족수당 등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정부의 가계현금급여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sup>9)</sup>
- ● 또한 OECD는 각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이 2013년과 2016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기간 전반적으로 상승

9)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4. p. 44.

-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소득공제제도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는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수록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 누진성은 2013년 대비 다소나마 개선
  - 누진성에 있어 OECD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가구형태는 “기혼·2자녀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3] 독신·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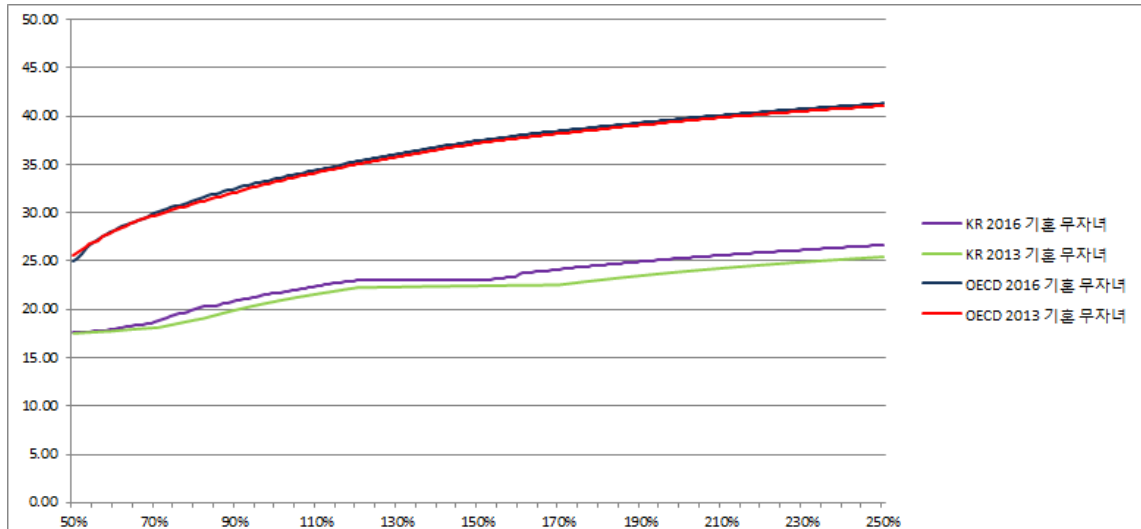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접속일자: 2017.5.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4] 기혼·무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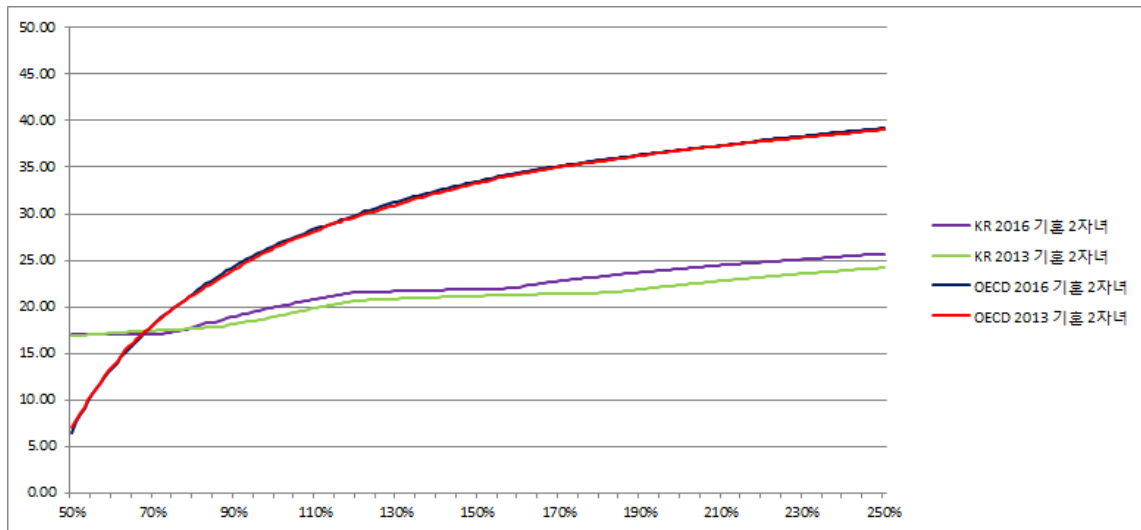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접속일자: 2017.5.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5] 기혼·2자녀 가구의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자료: OECD, Tax wedge decomposition(<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WCOMP>, 접속일자: 2017.5.2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구형태별 세부담 추이를 살펴보면 OECD의 경우 2000년 대비 2016년 조세격차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표 II-5, 6, 7> 참조)<sup>10)</sup>
  - OECD의 평균 조세격차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 대비 2016년 평균 조세격차는 여전히 1%p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기간 동안 매년 조세격차가 상승하여 모든 가구형태에서 2000년 대비 2016년 조세격차가 4~5%p 이상 상승
    - 독신·무자녀 가구의 경우 2016년 기준 22.2%로 2000년(16.4%) 대비 5.8%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멕시코(7.4%p) 다음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임
    - 기혼·2자녀 가구 및 기혼·무자녀 가구의 조세격차 역시 동 기간 각각 4.3%p와 5.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

<표 II-5> 주요국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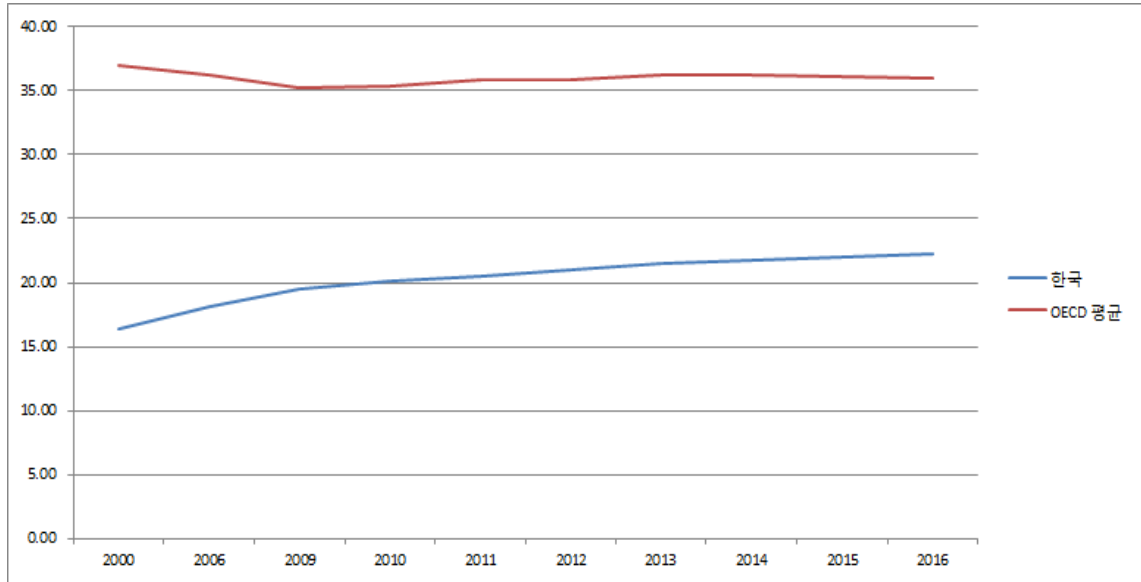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32.9	31.8	30.5	30.4	30.7	30.8	31.0	31.6	31.5	31.4
프랑스	50.4	49.7	49.8	49.9	50.0	50.1	48.8	48.4	48.4	48.1
독일	52.9	52.3	50.8	49.0	49.7	49.6	49.2	49.3	49.4	49.4
이탈리아	47.1	46.1	46.8	47.2	47.6	47.7	47.8	47.8	47.9	47.8
일본	29.8	28.8	29.2	30.2	30.8	31.3	31.6	32.0	32.3	32.4
한국	16.4	18.2	19.5	20.1	20.5	21.0	21.5	21.7	22.0	22.2
영국	32.6	34.0	32.4	32.6	32.5	32.1	31.4	31.0	30.8	30.8
미국	30.8	30.6	30.3	30.7	29.9	29.8	31.5	31.6	31.6	31.7
OECD 평균	37.0	36.2	35.2	35.3	35.8	35.9	36.2	36.2	36.1	36.0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44.

10) 본 보고서에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국가와 우리나라의 독신·무자녀 가구(100% 임금수준), 기혼·2자녀 가구(133% 임금수준), 기혼·무자녀 가구(133% 임금수준)의 현황만을 제시함. OECD 35개 회원국에 대한 전체 가구형태 별 자료는 OECD의 *Taxing Wages 2017*, pp. 144, 156, 162 참조

[그림 II-6] OECD와 우리나라의 독신·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00%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4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6] 주요국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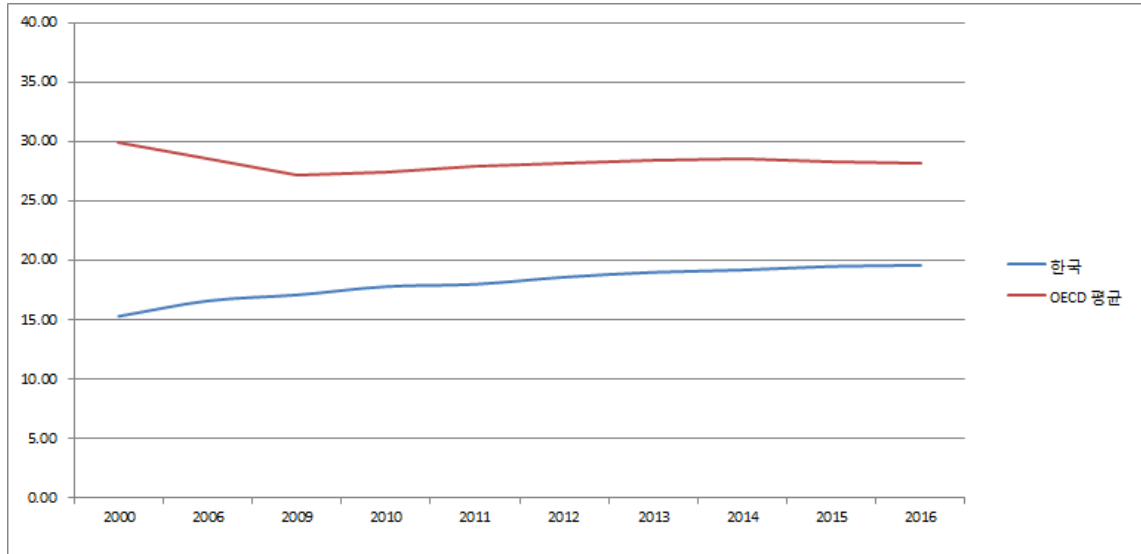
(단위: %)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26.9	25.4	23	23.2	23.4	23.7	24	24.2	19.9	20.5
프랑스	40.5	40	40.4	40.6	40.7	41	39.4	37.5	37.8	37.5
독일	41.2	41	38.9	37.7	38.6	38.7	38.3	38.5	38.6	38.8
이탈리아	41.1	39.1	38.9	39.6	40.2	40.5	40.3	38.9	38.5	38.4
일본	27.7	24.8	24.9	24	25.1	27.2	27.5	28	28.4	28.5
한국	15.3	16.6	17.1	17.8	18	18.6	19	19.2	19.5	19.6
영국	25.5	26	24.4	24.7	24.8	24.4	23.3	22.6	22.4	22.4
미국	25	23	22.6	23	22.6	22.7	24.3	24.6	24.4	24.5
OECD 평균	29.9	28.6	27.2	27.4	27.9	28.2	28.5	28.6	28.3	28.2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56.

[그림 II-7]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2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5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7] 주요국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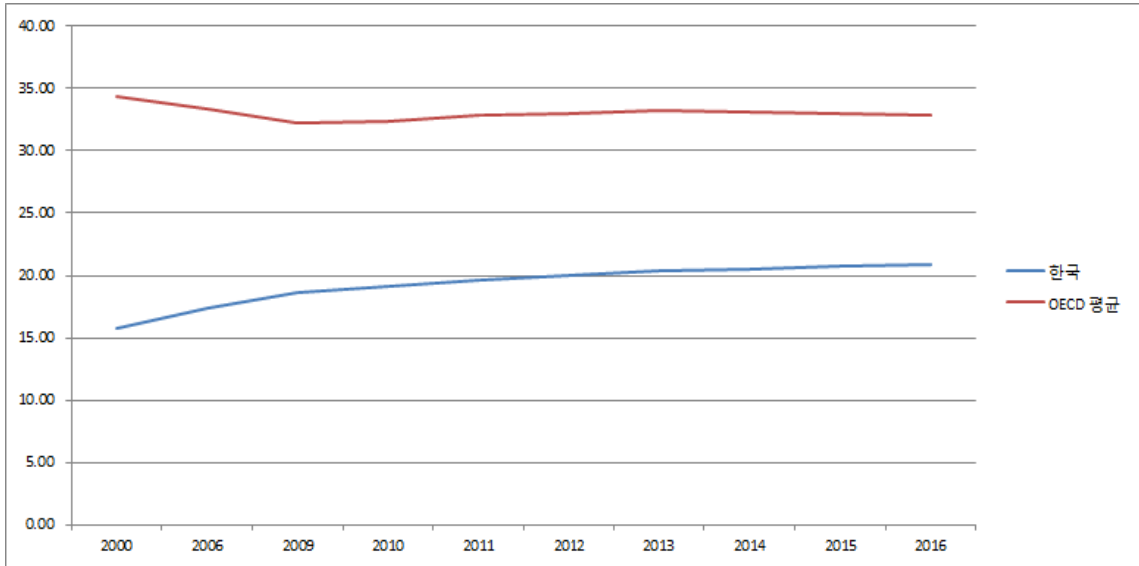
(단위: %)

국 가	2000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캐나다	30	28.7	27.3	27.2	27.5	27.7	27.8	28.4	28.4	28.3
프랑스	45.3	44.4	46.1	46.1	46.2	46.4	44.9	44.4	43.7	42.7
독일	47.5	47.4	45.9	44.8	45.5	45.4	45	45	45.1	45.2
이탈리아	44	42.7	43.4	43.9	44.4	44.6	44.8	43.3	42.8	42.7
일본	29.1	28	28.3	29.4	30	30.4	30.7	31.1	31.5	31.6
한국	15.8	17.4	18.6	19.2	19.6	20	20.4	20.5	20.8	20.9
영국	29.1	30.6	29.1	29.3	28.4	27.8	26.7	26.1	25.8	25.8
미국	29.5	28.8	28	28.3	27.8	27.7	29.3	29.5	29.2	29.2
OECD 평균	34.3	33.3	32.2	32.3	32.8	33	33.2	33.1	33	32.8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2.

[그림 II-8] OECD와 우리나라의 기혼·무자녀 가구 조세격차 추이(133% 임금수준, 2000-2016년)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7*, p. 1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II 요약 및 시사점

- ● 우리나라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4.0%로 OECD 평균인 8.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sup>11)</sup>
  -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기준 16.3%로 OECD 평균(2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sup>12)</sup>
- ● 또한 전반적인 세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임

11)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 (접속일: 2017. 6. 13)

12) OECD Database, <https://data.oecd.org/tax/tax-on-personal-income.htm#indicator-chart> (접속일: 2017. 6. 13)

- 이러한 현상은 모든 가구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2자녀 가구의 저소득 구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이 OECD를 상회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상대적 고소득 구간에서의 세부담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저소득 구간에서의 세부담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OECD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음
-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OECD 국가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누진성 강화를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종석(2016)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sup>13)</sup>
  -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 참고문헌 |

-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4.
- \_\_\_\_\_,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OECD, *Taxing Wages*, 2017.

13) 안종석,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159.



**BRIEF**

---

*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7. 7. 20(통권 제51호)

---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